

소방청 전문경력관 나군(운항관제)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소방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10월 28일
소방청장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시기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전문경력관 나군 (운항관제)	1명	'25년 1월(예정)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세종)

2 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운항관제	전문경력관 나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소방헬기 출동상황 조정·관제 및 항공통신망 지휘·작전·관제○ 소방헬기 네트워크 형성 및 광역출동체계 가동○ 항공기 사고 육상 수색구조(RCC)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전문경력관 규정, 공무원 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4.12.19.)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2006.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 「항공안전법」 제43조(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에 따른 효력 정지 및 취소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4.12.19.) 기준]

- 전문경력관 나군(운항관제)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운항관제	응시 자격 요건	자격 및 경력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운항관리사 또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후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급) 4등급 이상인 자 ○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자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을 모두 충족하면 응시 가능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4.12.19.)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함
-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의 모든 사항은 **증빙자료 제출 건만 인정함**

○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경력의 범위 【응시자격 요건(자격증)】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함(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①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담당업무 미기재, 채용 분야와 연관성이 불분명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담당업무를 기술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② 비정규직의 경우 관련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 ③ 경력증명서 제출 시 대표자 직인 및 발급자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기재(각종 증명서류 미제출 시 관련 업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필수 제출)
- ④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예외) 발행분을 제출하고,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원본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 ⑤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경력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 또는 근무시간이 불분명한 근무경력은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람만 인정

- ①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 일부를 인정
 - 근무시간이 불분명한 프리랜서의 경우, 채용 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일부 인정 가능. 단, 이 경우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업무실적, 수입 규모 등 추가 자료 제출 필요
- ②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중에서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을 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 함

■ 폐업회사의 경우 다음의 경력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 ③ 소득금액증명원,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제출 필수(①, ②, ③, ④ 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취득실확인서(total.kcomwel.or.kr)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ei.go.kr)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을 받은 한국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함

※ 경력증명서, 자격증(면허증) 등 서류 확인 결과 부적합한 자는 합격 취소 또는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함

다.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2024.11.7.) 기준]

자격증 등	○ 운항관리사와 항공교통관제사 2가지 자격증 보유자					
	○ 영어 능통자 [아래의 성적 보유자 2년 이내의 성적]					
	구분	토플		토픽	텡스	지텔프
	PBT	IBT				
종류	530점 이상	71점 이상	700점 이상	340점 이상	Level2의 65점 이상	625점 이상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 관련

- [자격] 운항관리사, 항공교통관제사 2가지 모두 소지 시 우대요건 인정
- [영어능력검정시험] 복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소지 시 1개만 인정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직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일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실기시험

- (시험대상)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기준) 당해 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평정표에 따라 평정요소별로 평정하고 점수 부여

채용분야	실기시험 평정항목
운항관제 (구술 10개 항목)	① 운항계획 ② 항공정보 ③ 입출항 절차 ④ 비행 중 절차 ⑤ 운항관리 ⑥ 항행안전시설 ⑦ 비정상 운항절차 ⑧ 회전익 운항 기술기준 ⑨ 항공 영어/항공기사고 수색구조 ⑩ 항공안전관리/항공안전법

- (합격기준) 평정위원 합산점수에서 평정항목별 40퍼센트 이상, 전 평정항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다. 면접시험

-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소통 · 공감, ②헌신 · 열정, ③창의 · 혁신, ④윤리 · 책임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시험 일정

시험단계	시험절차	시험공고	시험일시	합격자 발표
------	------	------	------	--------

시험공고: '24. 10. 28.(월)

원서접수: '24. 11. 4.(월) ~ 11. 7.(목)

1차	서류전형	-	-	11. 20.(수)
2차	실기시험	11. 20.(수)	12. 5.(목) ~ 12. 6.(금) ※ 기간 중 하루	12. 10.(화)
3차	면접시험	12. 10.(화)	12. 18.(수) ~ 12. 19.(목) ※ 기간 중 하루	12. 27.(금)

- 1) 응시번호는 '24. 11. 18.(월) 10:00부터 119고시 마이페이지(원서제출내역)에서 확인 가능
- 2)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공고 예정
- 3) 시험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 119고시 누리집(119gosi.kr) 게시
- 4) 2024년 하반기 소방공무원(항공분야) 채용시험(공고 2024-230호)와 중복접수 불가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24. 11. 4.(월) 10:00 ~ 11. 7.(목) 18:00
※ 문의전화: 044-205-7292(채용절차), 044-205-7286(응시자격, 서류안내)
- 접수방법: 119고시(119gosi.kr) 인터넷 접수만 가능(우편, 팩스, 전자우편은 불가능)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주말·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접수 가능
 -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응시수수료 결제를 완료해야 함
※ 119고시 접속 시간과 관계없이 18시 이후부터는 접수 불가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응시수수료를 결제(납부)하지 않으면 응시원서 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응시 포기 처리
 - 응시자는 원서접수 완료 후 정확한 접수가 되었는지 119고시에서 확인할 것 (119고시 → 마이페이지 → 내접수내역)
 - 원서접수 이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주민등록 초본 등 증빙서류 제출
※ 면접시험 시 신분증, 응시표, 관련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소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면접시험일에 제출
- 응시수수료: 7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됨

나. 제출서류

- 증명서류는 서류전형 시 자격요건 충족 여부 심사의 근거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 시 불합격 처리함
- 경력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전화상담(☎ 044-205-7286) 후 모든 서류구비 후 제출할 것을 권장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한글 번역문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

구분	내용	
1. 자기소개서 1부	○ A4 2매 이내로 작성	
2. 직무수행계획서 1부	○ A4 4매 이내로 작성	
3.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자필 기재 및 서명	
4. (경력) 자격요건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상근여부(상근·비상근·전일제·시간제·주당 근무시간 포함하여 표기), 채용 관련분야와 연관성 판단할 수 있도록 담당업무 상세 기재 ○ 발급담당자 성명·전화번호·이메일 등 연락처 기재(용도는 기관 제출용으로 기재(대표자 또는 회사 직인 포함) ※ 단 응시자 본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력 등의 경우는 제외	
5. (경력)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경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해당기간 출력·제출	
6. (경력) 소득금액증명원 1부	○ 경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해당기간 출력·제출	
7. (경력) 근무경력 사실확인서 1부	○ 폐업에 따른 근무경력 입증(9p 참고)	
8. 운항관리사 또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서 1부	-	
9.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4등급 이상)	○ 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급	
10.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	
아래 사항은 해당자만 제출		
우 대 요 건	11. 운항관리사 자격증, 항공교통 관제사 자격증	○ 두가지 자격 모두 제출 시 우대요건 충족
	12. 영어검정시험 성적증명서	○ 우대요건을 충족하는 복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소지 시 1개만 인정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

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 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4. 12. 30. ~ '25. 1. 29.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5. 1월 중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9 안내 및 참고사항

-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또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채용절차: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044-205-7286~92)

2) 직무 관련 사항: 소방청 119종합상황실(044-205-7072)

※ 문의전화: 09:00 ~ 18:00, <토요일, 공휴일,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제14925호)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2329호)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영구 임용결격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4.5.31.을 기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181(2022.11.24.), 2020헌마1605-2022헌마1276(병합) (2023.6.29.))을 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부입법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인바, 이에 따르면 동법 개정 이후 개정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용될 수 없고, 임용되었더라도 개정법 시행일에 퇴직하게 됩니다. 정부입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운항관제	전문경력관 나군	1명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소방헬기 출동상황 조정·관제 ○ 항공통신망 지휘·작전 및 관제 ○ 소방헬기 네트워크 형성 ○ 대규모 재난발생시 광역출동체계 가동 ○ 항공기사고 육상 수색구조(RCC) 업무
-------------	--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논리적사고, 전문성 등
-------------	--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기 출동상황 조정·관제에 관한 지식 ○ 항공통신망 지휘·작전운영에 관한 지식 ○ 소방헬기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지식
-------------	---

응시 자 격 요 건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관련분야: 운항관제																	
자격 및 경력	<p>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항관리사 또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후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급) 4등급 이상인 자 ○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항관리사와 항공교통관제사 2가지 자격증 보유자 ○ 영어 능통자 [아래의 성적 보유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토플</th> <th rowspan="2">토익</th> <th rowspan="2">텝스</th> <th rowspan="2">지텔프</th> <th rowspan="2">플렉스</th> </tr> <tr> <th>PBT</th> <th>IBT</th> </tr> </thead> <tbody> <tr> <td>종류</td> <td>530점 이상</td> <td>71점 이상</td> <td>700점 이상</td> <td>340점 이상</td> <td>Level2의 65점 이상</td> <td>625점 이상</td> </tr> </tbody> </table>		구분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PBT	IBT	종류	530점 이상	71점 이상	700점 이상	340점 이상	Level2의 65점 이상	625점 이상
구분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PBT	IBT																
종류	530점 이상	71점 이상	700점 이상	340점 이상	Level2의 65점 이상	625점 이상												

직무수행 계획서

응시번호		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성 요령<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글(hwp) 양식으로 작성할 것- 분량은 요약서 A4 1매 + A4용지 3매(총 4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글자체는 휴먼명조 / 크기는 13포인트 / 글자 색은 검정- 줄 간격 160%로 작성할 것- 보고서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 시험공고에 명시된 채용예정 직무분야 업무와 연계하여 자유롭게 작성<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 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②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구체적 실천방안 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하면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 작성 안내 사항은 삭제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p>			
2024. . . 작성자: (서명 또는 인)			

근무경력 사실확인서(해산 또는 폐업)

이 사실확인서는 해산(폐업)에 따른 경력에 대한 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입증이 허위,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문서 위조, 변조 등) 등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다음 사실을 입증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 경력	사업체명	해산(폐업) 연도	직 위	재직기간	담당업무
					. . . ~ . . . (년 월)

입증인(1) 주소: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근무처(직위): _____ 주민등록번호: - _____
 제출자와의 관계: _____ 연락전화번호: - _____

입증인(2) 주소: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근무처(직위): _____ 주민등록번호: - _____
 제출자와의 관계: _____ 연락전화번호: - _____

붙임: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1부

소방청장 귀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소 방 청
National Fire Agency **119**